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1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원태,
민병주, 박강산, 아이수루,
, 유정희, 이민옥, 이소라,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전병주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내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의 권리 신장 및 차별을 해소하고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등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항 규정 (안 제4조)
- 나.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상위법 근거하여 특수교육 교원 및 인력 채용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의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장애정도, 학교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u>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u>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통합교육 지원) (생략)	제9조의3(통합교육 지원)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 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 도록 장애유형·장애정도, 학교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 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u>

<신 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적합한 통합학급 교육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력
을 채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1항제7호 및 제9조의 3(통합교육 지원)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팀, 특수교육지원팀, 특수교육과정팀)하여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